

415 총선 정책공약 제안(공통)

○ 단체명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구분	내용								
공약명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이드라인 동일적용)								
현황	○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현황 및 확보계획								
	- 하단의 확보계획인 보건복지부의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확보계획으로 2018년 4월 당시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3% 인상을 가정으로 추계함. (단위 : 천원, 백만원)								
	사업명	구분	'18 예산	'19		'20		'21	'22
				계획	확보	계획	확보 ²⁾	계획	계획
	계	예산 합계	788,586	848,827	811,593	910,959	850,050	936,581	969,869
	장애 인 거주 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	94.4%	97.0%	94.1%	100%	95.0%	100%	100%
		인건비 단가(천원)	43,765	46,215	44,812	48,988	46,514	50,458	51,972
		증가율	-	5.6%	2.4%	6.0%	3.8%	3.0%	3.0%
		예산(백만원)	468,952	495,213	478,750	524,926	498,369	540,674	556,894
	정신 요양 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	92.2%	95.4%	93.3%	100%	94.6%	100%	100%
		인건비 단가(천원)	4,183/월	4,459/월	4,309/월	4,758/월	4,499/월	4,902/월	5,049/월
		증가율	-	6.6%	3.0	6.7%	4.4	3.0%	3.0%
		예산(백만원)	69,774	74,387	71,883	80,860	72,736	79,216	81,592
	노숙 인 거주 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	83.2%	90.5%	84.8	100%	90.1	100%	100%
		인건비 단가(천원)	29,208	31,464	33,720	35,883	34,536	35,572	36,639
		증가율	-	12.0%	15.4%	6.4%	2.4%	3.0%	3.0%
		예산(백만원)	28,799	32,255	30,873	39,975	32,051	37,209	38,326
	양로 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	92.2%	97.6%	91.7%	100.0%	93.2%	100.0%	100.0%
		인건비 단가(천원)	2,225	2,430	2,283	2,578	2,403	2,655	2,735
		증가율	-	9.2%	2.8%	6.1%	4.3%	3.0%	3.0%
	예산(백만원)	34,483	38,561	33,578	40,913	35,727	42,140	43,404	
아동 그룹 홈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	80.9%	85.2%	82.5%	89.9%	83.9%	94.8%	100.0%	
	인건비 단가(천원)	24,942	27,087	26,189	29,416	27,446	31,946	34,694	
	증가율	-	8.6%	5%	8.6%	4.8%	8.6%	8.6%	
	예산(백만원)	19,132	21,415	21,163	23,362	22,697	26,056	26,294	
지역 자활 센터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	90.4%	95.7%	91.4%	100%	93%	100%	100%	
	인건비 단가(천원, 년)	39,293	42,829	40,725	46,684	43,416	48,085	49,528	
	증가율	-	9.0%	1.8%	9.0%	4.8%	3.0%	3.0%	
	예산(백만원)	44,874	48,509	46,255	52,459	52,522	54,033	55,654	
지역 아동 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	65%	80%	70.6	81%	70.5	90%	100%	
	(시설장 생활복지사)	83%	94%	88.7	100%	88.6	100%	100%	
	인건비 단가(천원)	5,160	5,830	5,290	6,250	5,690	6,620	7,060	
	증가율	-	13.0%	2.5%	7.2%	7.6%	5.9%	6.6%	
	예산(백만원)	122,572	138,487	129,091	148,464	135,948	157,253	167,705	

* 출처 김명연 의원실 (2019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p>문제점</p>	<p>○ 2022년까지 계획에 따른 확보 불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그룹홈의 경우 20년 계획이 23,362백만원(89.9%)을 목표로 하였으나, 22,793백만원(84.4%) 상승에 그쳐 22년 계획 26,294백만원(100%)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가이드라인 적용(제주, 인천, 강원, 서울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급여 편차의 발생은 종사자의 차별과 서비스의 질적 차별을 불러올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법인시설만 가이드라인을 적용시켜 개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이 발생될 것으로 보임.
<p>공약요구사항</p>	<p>○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 및 국비예산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확보계획에 대한 개선 및 실질적 예산확보 계획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운영주체(법인, 개인) 구분 없이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구 분	내 용					
공약명	○ 대한민국 헌법에 ‘아동’ 을 명시					
현황	○ 헌법 제 34조 4항 - 현행 헌법 제 34조 제 4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하여 국가의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생애과정에 속한 노인과 청소년을 명시하고 있음.					
문제점	○ 헌법의 ‘국민’ 은 ‘아동’ 이 포함된 개념 - 국민인 아동도 당연히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누려야 하는 존재임. - 현행 헌법 제 34조 제 4항에 성인의 보호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누락되어 있음.					
공약요구사항	○ 헌법에 ‘아동’ 명시 <table border="1" data-bbox="502 1003 1380 1249"> <thead> <tr> <th data-bbox="502 1003 941 1059">현행(34조 4항)</th> <th data-bbox="941 1003 1380 1059">개정안(34조 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02 1059 941 1249">국가는 <u>노인과 청소년</u>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td> <td data-bbox="941 1059 1380 1249">국가는 <u>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u>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td> </tr> </tbody> </table>		현행(34조 4항)	개정안(34조 사항)	국가는 <u>노인과 청소년</u> 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u>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u> 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현행(34조 4항)	개정안(34조 사항)					
국가는 <u>노인과 청소년</u> 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u>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u> 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415 총선 정책공약 제안(개별단체)

○ 단체명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구 분	내 용								
공약명	○ 그룹홈 아동을 위한 자립전담요원 배치								
현황	<p>○ 아동그룹홈 전담요원 배치 0명</p> <p>-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 아동자립전담요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가 필요하나, 현재 자립요원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p> <p>- 전국 아동자립전담요원의 배치상황 (2018년 기준)</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text-align: left;">구분</th> <th style="text-align: left;">양육시설</th> <th style="text-align: left;">가정위탁</th> <th style="text-align: left;">그룹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자립지원 요원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234</td> <td style="text-align: center;">18명 (중앙 1, 지역 17)</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분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자립지원 요원 수	234	18명 (중앙 1, 지역 17)	-
구분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자립지원 요원 수	234	18명 (중앙 1, 지역 17)	-						
문제점	○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한 아동들도 자립을 위한 주거, 생활, 의료지원이 이루어져야하고, 특성에 맞는 자립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								
공약요구사항	○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수를 감안하여 최소 40명(중앙 4명, 지역 36명)의 자립전담요원 배치(지역별 배치기준 아동 30명 이상 요원 1명 배치, 아동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구 분	내 용
공약명	○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현황	○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가정형 시설로 외부의 지원(전달)체계가 더욱 필요함. 사회복지사 2~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만 학대, 방임, 가정해체로 지자체의 관리 아래 입소되는 아동들은 심리 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경계선 지능 장애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음.

	<p>○ 상처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평균 5~7명)을 24시간 365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사(빨래, 청소, 식사 외), 행정, 양육, 원가족 상담, 아동 학교생활 관리 등에 종사자에 대한 소진예방,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체계적 지원체계가 없음.</p>
<p>문제점</p>	<p>○ 경기도 149개소, 전라북도 62개소가 넘는 아동그룹홈이 있으며, 보호대상의 “탈 시설화”와 “가정형”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들을 소규모 보호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앙과 시도별 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현재 가정위탁의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개별 위탁아동과 양육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그룹홈은 그러한 지원체계가 없으며,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p>
<p>공약요구사항</p>	<p>○ 아동권리보장원 내 아동그룹홈 지원조직 마련 ○ 시도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p>